
2017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우수연구집단육성) 신청요강

2017. 5.

연구과제 신청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사업신청을 위한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전공 및 심사가능분야, 학위 등)은 다음 쪽 참조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는 [붙임7]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시스템에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탑재 방법은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참고)
- ③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은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④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시간 3~4시간 전까지 온라인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⑤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8쪽 참조)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17. 6. 21.(수) 14:00 ~ 2017. 6. 27.(화) 18:00
주관연구기관 확인	2017. 6. 21.(수) 14:00 ~ 2017. 6. 29.(목)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확인 ▷ 신청 완료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항목 입력 안내

한국연구자정보(KRI)(<http://www.kri.go.kr>) ▶ 신청자 본인의 최신 정보를 입력(수정)함
 - 신청자 소속 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 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협정체결기관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누락 시 신청 불가

▶ 필수항목

구분	항목	비고
기본정보	생년월일	예) 19701231
	성별	남성(1), 여성(2)
	연구실 전화번호	예) 02-123-1234
	이메일	예) sample@aaa.edu
	소속기관	
	단과대학	단과대학이 없는 경우 '단과대 구분 없음'으로 입력
	학과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소속 학과 없음'으로 입력
전공 및 심사가능분야	전공코드	
학위	학위구분	선행 학위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 박사인 경우 : 석사, 학사 정보 필수 - 석사인 경우 : 학사 정보 필수
	수여대학	재단의 기관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
	학과	재단의 학과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은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학과 입력란 옆의 돋보기 그림을 클릭 ▷학과명 입력 ▷직접입력 버튼 클릭)
	지도교수명	지도교수를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 KRI에 등록이 안된 지도교수는 성명을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지도교수명'란에 직접 입력)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신청 주요사항 요약 -

구분	2016	2017
지원예산	○ 총예산 : 26,800백만원 - 신규 : 없음 - 계속 : 26,800백만원(74과제)	○ 총예산 : 27,352백만원 - 신규 : 1,620백만원(12과제 내외) - 계속 : 25,732백만원(56과제 내외)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한정함	○ 좌동 ※ 좌동
지원규모 (연/과제당)	① 소형 : 없음 ② 중형 : 연 230백만원 이내(간접비 별도) ③ 대형 : 연 450백만원 이내(간접비 별도) ※ 소(중, 대)형3년차 ABD해외연수 선택시 25백만원 추가 신청 가능(단 ABD해외연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지원)	① 소형 : 연 100백만원 이내(간접비 별도) ② 중형 : 좌동 ③ 대형 : 좌동 ※ 좌동
지원기간	① 소형 : 없음 ② 중형 : 3년(2+1) 신규+계속과제 ③ 대형 : 4년(2+2) 신규과제	① 소형 : 3년(2+1) 신규과제 ② 중형 : 3년(2+1) 계속과제 ③ 대형 : 4년(2+2) 신규+계속과제
평가절차	○ 요건심사→전공평가(패널+발표) →종합평가	○ 좌동
공모방식	○ 신규과제 : 해당없음	○ 신규과제 - Top-down 지정 Agenda 85% 내외 선정 - Bottom-up 자유 Agenda 15% 내외 선정 ※ 선정평가 결과 신청과제가 일정수준 미달 시 지정 Agenda 100% 선정 가능
연구결과물 제출	① 소형 : 연구팀당 1년에 200% 이상 ② 중형 : 연구단당 1년에 400% 이상 ③ 대형 : 연구센터당 1년에 700% 이상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추진일정	○ 신규과제 : 해당없음	○ 신규 과제 - 5월 공고/7~8월 심사/9월 지원 - 연구개시 : 9. 1.

- 차 례 -

I.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1
2. 지원근거	1
3. '17년 중점 추진방향	1
4. '17년 예산 현황	2
5. 기대효과	2
6. 추진일정	2
II. 지원내용	
1.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3
2. 지원유형 및 운영	4
3. 연구개시	6
III. 과제 신청	
1. 신청자격 및 방법	7
2. 신청절차	9
3. 신청 및 참여제한	11
IV. 평가 및 선정	
1. 평가단계	13
2. 평가항목 및 배점	13
3. 평가절차 및 내용	13
4. 선정 및 협약체결	14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14
2. 연구비 관리	14
VI. 연구과제 관리	
1. 평가유형 및 평가내용	15
2. 보고서 제출	17
3. 학술활동 성과 관리	19
VII. 기타사항	
1. 간접비 지급	21
2. 기타 참고사항	21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23
[붙임2] 운영 세부사항	24
[붙임3] 2017년 신규 아젠다	27
[붙임4] 평가항목 및 배점	28
[붙임5] 연구결과물 산정 비율표	30
[붙임6] 소형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양식	31
[붙임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38
[붙임8]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FAQ	39

1. 사업목적

-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 ☐ 국가·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Think Tank) 육성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시
-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2. 지원근거

-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3. '17년 중점 추진방향

- ☐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세계 수준의 대형연구센터 선정
- ☐ 기존 아젠다 외에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 및 당면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소형연구팀 선정
- ☐ 연합연구단(센터)에 대한 '융합연구 활성화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연차점검항목 신설 등 사업관리 강화
- ☐ '사업개편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향후 사업재설계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4. '17년 예산 현황 : 27,352백만원

(단위:과제/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비 고
우수연구집단육성 과제	신규과제	1,620	12	대형 31과제 내외
	계속과제	25,732	56	중형 25과제 내외
	계	27,352	68	소형 12과제 내외

5. 기대효과

- ☐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 특성화된 대형연구센터 육성 및 관련 DB구축

- ☐ 한국사회의 미래 예측에 기반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과학의 책무성 제고

6.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17. 5월	■ '17년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 ■ 우수연구집단육성(신규)과제 신청공고
'17. 6월	■ 우수연구집단육성(신규)과제 신청접수 ■ 우수연구집단육성(계속)과제 연차 및 단계보고서 접수
'17. 7~8월	■ 우수연구집단육성(신규)과제 선정평가 ■ 우수연구집단육성(계속)과제 단계평가/연차평가/연차점검
'17. 9월	■ 우수연구집단육성(신규, 계속)과제 연구 개시(9.1.)

1.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인문사회 **전** 분야

※ 인문-사회과학 융합 분야 포함

☐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원)에 한정함. 단, 국공립대 기금교수의 경우 연구책임자로 참여 가능

※ 고등교육법 개정('11.7.21)으로 전임강사의 명칭이 폐지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로 봄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 14조 (교직원의 구분)

-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연구주제(신규) : 지정[Top-Down] Agenda 중심 선정

- Top-Down Agenda :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사회과학 장기 Agenda중심으로 신규과제의 85%내외 선정

※ 사회과학 아젠다 개발 연구 및 학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

※ 소형 Mega-Agenda 세부 개요 : 붙임 참조

'17년 SSK 소형 4대 Mega-Agenda

- 공공문제 해결과 리스크관리
- 제4차 산업혁명과 융합적 공진화
- 다차원적 삶의 질
-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공공성

- 자유[Bottom-Up] Agenda : 포괄적 연구영역으로 신규과제의 15% 내외 선정
 - ※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쟁점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 ※ 연구주제는 사회적·학문적 함의가 높은 것으로서, 장기적인 연구주제로 발전·확대 가능한 것이어야 함
 - ※ 지정/자유 Agenda의 선정비율은 과제 신청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 자유 Agenda 신청과제가 선정평가 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 Agenda 100% 선정 가능

2. 지원유형 및 운영

☐ 유형별 지원규모(총괄)

유형	1단계 : 소형(3년)	2단계 : 중형(3년)	3단계 : 대형(4년)
연구비	100백만원 이내	230백만원 이내	450백만원 이내

※ '17년 신규 과제는 향후 정부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운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소형단계 사업운영

1단계 : 소형(연구팀)	
단계별 목표	- 중장기 연구 방향 설정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한 기틀 마련
연구기간	- 3년(2+1)
연차 / 단계평가	- 1차년도 연차평가는 컨설팅으로 탈락 없음 - 2차년도 연차평가는 하위 20% 내외 탈락(연구팀 기준) - 중형진입 단계평가 시, 하위 50% 내외 탈락(연구팀 기준)
연구활동	- 연구기반 구축 및 기초연구 - 학문의 다변화에 따른 사회과학분야 학제간 연구 - 타학문 분야와의 교류 연계 활동
연구비	- 연간 1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3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함 - 공동연구원(일반공동연구원 + 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 ※ 전임연구인력 의무 참여 없음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소형단계 3년차에 실시 ※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 - 연수지원 기간 1년 이내(2,500만 원 이내) ※ ABD해외연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지원 -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또는 재단등재지 논문 제출

□ 중형단계 사업운영

2단계 : 중형(연구단)	
단계별 목표	- 집단연구 거점 형성 및 중장기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연구기간	- 3년(2+1)
연차 / 단계평가	- 1차년도 연차평가는 컨설팅으로 탈락 없음 - 2차년도 연차평가는 하위 20% 내외 탈락(연구단 기준) - 대형진입 단계평가 시 하위 50% 내외 탈락(연구단 기준)
연구활동	- 연구 아젠다의 확장과 심화 - 사회과학분야 장기 응용연구 - 거점대학 연구시설 및 공간 확보
연구비	· 연간 2.3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 교내대응자금 투입 가능(최소기준 없음 : 평가 시 반영) - 주관대학의 연구소 공간 지원 권장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7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 - 공동연구원 6명 이상(연구교수 포함 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 - 전담행정원(Staff) 1명 ※ 동일대학에 복수의 연구단·연구센터가 있을 경우 3개 연구단·연구센터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전담행정원을 둔다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중형단계 3년차에 실시 ※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 - 연수지원 기간 1년 이내(2,500만 원 이내) ※ ABD해외연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잔여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별로 지원 -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또는 재단등재지 논문 제출

□ 대형단계 사업운영

3단계 : 대형(연구센터)	
단계별 목표	- 세계적 수준 문제해결형 Agenda 특화 연구센터 육성 -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Think Tank 기능
연구기간	- 4년(2+2)
연차평가	- 2년차 이후 연차평가 시 하위 10% 내외 탈락 가능 - 사업종료 후 대형연구센터 자생력 확보 방안 ※ 교내 및 기업체의 협력의지 / 성과확산 의지 명시
연구활동	- 연구성과 집약 및 확산을 통한 지식의 체계화 - 차세대사회과학자 양성(연구거점) - 국내외 대학간 국제공동연구 및 학생교류 - 필요시 한국사회 특정 Agenda분야 정책지원 허브 육성
연구비	• 연간 4.5억원 이내(간접비 별도 지급) - 교내대응자금 투입 가능(최소기준 없음 : 평가 반영) - 주관대학의 연구소 공간 지원 필수 - 민간기업 대응자금(현물+현금) 투입 가능 ※ 최소기준 없음 : 평가 반영(연구협력기관 명시)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14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 - 공동연구원 13명 이상(연구교수 포함 전임연구인력 4명 이상) - 전담행정원(Staff) 1명 ※ 동일대학에 복수의 연구단·연구센터가 있을 경우 3개 연구단·연구센터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전담행정원을 둔다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대형단계 3년차부터 실시 가능 ※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 - 연수지원 기간 1년 이내(2,500만 원 이내) ※ ABD해외연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잔여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별로 지원 -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또는 재단등재지 논문 제출

3.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 : 2017년 9월 1일

1.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업적이 논문 3편 이상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전임교원)이어야 함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제2조(정의)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12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자는 논문 3편, 공동 저자는 논문 2편으로 산정
- 특허 : 특허 1건은 논문 1편으로 산정
- ※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
- ※ 전임연구인력은 업적 요건 대상에서 제외함

○ 연구진 자격요건 및 구성기준

구 분		구성기준	연구업적 및 자격
연구책임자		1명	■ 연구업적 3편 이상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최소 2명 이상	
	전임연구인력		■ (전문)학사·석사·박사 과정생 및 학사·석사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책임자 : 사회과학분야(재단 사회과학단 RB분야 분류 기준. 단, RB분야중 여성학, 생활과학, 심리과학, 문헌정보학 등은 사회과학분야에 포함됨) 전임교원에 한정
 - ※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정년퇴직하더라도 소속대학이 연구책임자의 신분을 보장할 경우 해당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연구책임자로 참여 가능함. 다만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함
- 공동연구원의 전공분야(인문학, 예술학, 복합학, 이공분야 등) 제한은 없으며, 소형단계에서는 전임연구인력 참여 의무 없음
 - ※ 참여연구자중 최소 1인은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교원이어야 함
- 전임연구인력이 참여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전임연구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 전임연구인력 참여시 연간 3천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의 전임연구인력 수당 및 수당의 최대 10% 한도 내에서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각각 인건비에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1.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 박사수료생(ABD, All but Dissertation)은 국내에서 박사과정(course work)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서,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으로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함(선택사항)

□ 신청기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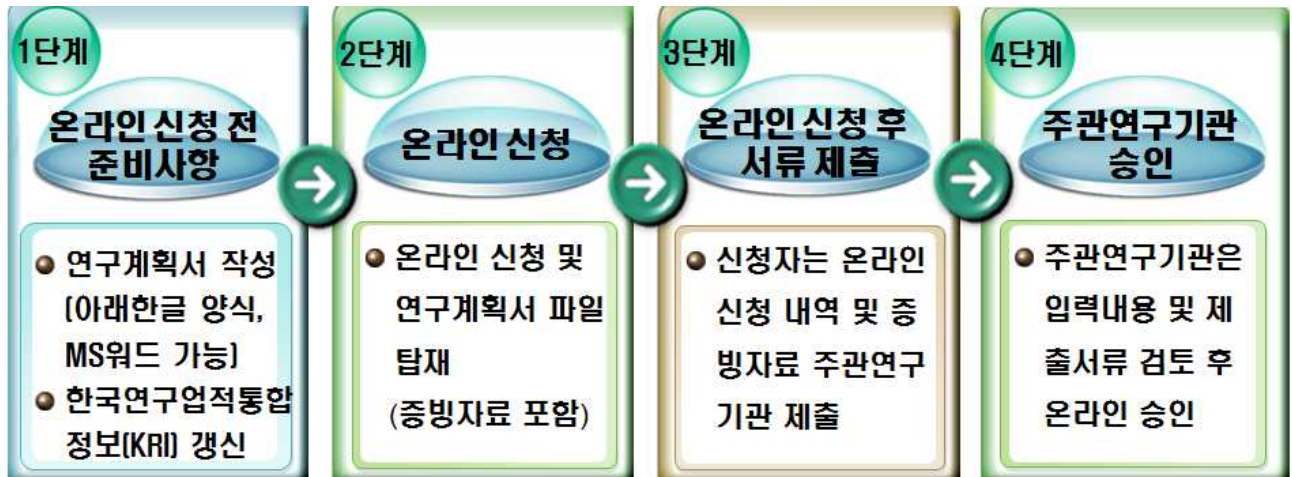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17. 6. 21.(수), 14:00 ~ 6. 27.(화),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17. 6. 21.(수), 14:00 ~ 6. 29.(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안내매뉴얼 참조)

-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2.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 신청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전문서비스 → 「한국연구자정보 (KRI)」에서 본인의 연구업적 등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입력(수정)하여야 함
 - 신청자의 KRI 입력내용 중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함. 아울러 KRI내에서 신청자의 정보공개여부 입력란은 반드시 ‘공개’로 설정하여야 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KRI에 추가 수정한 정보가 연동되어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KRI에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취소하고 KRI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붙임]의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국연구재단의 「한글」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MS워드」 작성가능)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평가요청학문분야 및 담당 학문단을 ‘연구분야 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사업자료실→연구분야분류표→[학술연구분야분류](#) [클릭]
 -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사회과학단)으로 문의

□ 온라인 신청

-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신청자의 대표업적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업적 중 3편(이공분야 5편)을 선택하여야 함
 -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기 전 『인쇄-미리보기』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붙임 7]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연구계획서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탑재하여야 함
- 연구장비 신청 시 사유를 온라인에 입력하되,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PC,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캠코더 등)의 구입 지양

□ 온라인 신청완료 후

- 신청자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계획서 등) 1부를 출력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 등)에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
 - 주관연구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통하여 승인조치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3. 신청 및 참여제한

□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하반기 공모 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 학문후속세대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토대연구지원(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 사업 포함), 대학중점연구소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인문한국(HK)지원, 사회과학연구(SSK)지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지원 중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 공동연구원은 신규 신청과제수와 기 참여과제수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SSK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거나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의무 미이행 연구자
 - 신청 이전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나,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 제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제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 단, 연구기간 종료일이 2017. 12. 31.까지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 수행 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 사업비에서 지원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참여제한 과제 수의 범위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과제임
- 다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종료일이 2017. 12. 31까지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종료일이 2018. 1. 1. 이후인 과제라도 우수학자지원 저술출판지원 중 저술성과확산지원 우수논문지원 정책중점연구소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사회과학연구지원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인문학대중화지원 중 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 등은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한 과제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사업비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신청 이후라도 참여제한이 확인되면, 최종 선정에서 제외

* **참여제한은 연구과제 신청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감안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 불가

* 연구비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신청 이후에라도 제재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 선정에서 제외**

- 현재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에 참여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중복 참여할 수 없음(단, 연구집단지원과제 참여연구자는 제외함)

1. 평가단계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 발표평가는 선정과제의 1.5배수 내외 선정함 ※ 평가배점 : 패널평가(70%) + 발표평가(30%)	전공평가단
		발표평가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2.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참조]

3. 평가절차 및 내용

□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 제 2 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 패널평가 + 발표평가
 - 패널/발표평가 : 연구계획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 평가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참조]

□ 제 3 단계 : 종합평가

- 평가주관 : 종합평가단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 평가결과 최종 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4.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 ※ 연구개시 후 협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연구인력 확보 등 신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
- ※ 연구비는 과제별 협약체결 이후 집행하여야 함
- ※ 다년과제의 경우 연차(단계)평가 후 지원이 결정된 연구비 지급

2.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 인문사회분야 연구비카드 사용 의무화로 사업비집행 모니터링 강화 및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 ※ (기존) 기관 법인카드 → (변경) 연구비카드 사용

1. 평가유형 및 평가내용

□ 단계별 1차 년도 연차점검

- 점검시기 : 연차보고서 온라인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 접수서류 : 연차보고서(소정양식) 및 연구성과물(학술논문, Working paper 등)
- 평가점수 및 조치 : 1차년도 연차점검은 Pass/Fail의 평가 개념이 아닌 컨설팅 개념(점수부여 없음)의 점검으로 실시함
- ※ 연차점검은 종합평가 없음
-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연구비 결정

□ 단계별 2차 년도 연차평가

- 평가시기 : 연차보고서 온라인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연구비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접수서류

- 연차보고서(소정양식) 및 연구성과물(학술논문, Working paper 등)
- 2차년도 연차평가는 2년간 연구업적을 통합하여 평가함
- ※ 필요시 현장평가 결과를 심사평가결과에 반영 할 수 있음

○ 평가점수 및 조치

- 60점 이상 계속지원, 60점 미만 지원중단
- 평가결과 하위 20% 내외 탈락
- ※ 탈락 시 발생하는 잔여예산은 필요시 신규 연구팀 선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
- 소형 3년차 ABD 해외연수비용은 연차평가 결과 지원이 중단된 연구팀의 예산으로 증액되므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결과 활용 : 차년도 지원 여부 및 연구비 결정

-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성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중형 진입 단계평가

- 평가목적 : 연구실적과 연구계획을 평가하여 성과달성 촉진 및 효율적 사업비 집행을 도모하고, 과제외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 제고
- 평가시기 : 단계보고서 온라인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계획 대비 연구업적(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 심사 ※ 필요시 연구팀 공동발표 및 토론 병행	전공평가단
		발표평가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접수서류

- 단계보고서(소정양식) 및 연구성과물(학술논문, Working paper 등)
- 단계평가는 3년간 연구업적을 통합하여 평가함
- ※ 필요시 현장평가 결과를 심사평가결과에 반영 할 수 있음

- 평가점수 및 조치
 - 60점 이상 계속지원, 60점 미만 지원중단
 - 평가결과 하위 50% 내외 탈락 가능(모든 팀을 단독성장팀으로 가정 시)
 - ※ 신청 시 2개 이상의 연구팀이 연합하여 1개의 연구단을 구성하거나, 1개 연구팀 단독으로 연구진을 추가 보강하여 연구단을 구성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활용 : 다음 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2. 보고서 제출

□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차별 연구종료 2개월 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 단계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단계별 연구종료 2개월 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단계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종료연구팀에 한정함)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 파일 탑재
 - 학술활동 요약문(국·영문) : 직접 입력
 - ※ 학술활동요약문의 내용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 직접 입력
-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 파일 탑재(해당 시)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 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 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제재 조치

□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입력

□ 종료과제 성과평가 및 학술활동 성과물 제출

-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는 종료일로부터 2년 이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미흡'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학술활동 성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 요구수준은 단순 양적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고려(공동저자수, SSCI등재여부, 전문우수학술저서여부 등)한 비율방식으로 환산)

구분	업적기준	비고
SSK 소형 연구팀	지원년수 × 과제당 200%이상	※ 연구결과물 산정 비율표는 붙임 참고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

※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에 한해 병기를 허용함

3. 학술활동 성과 관리

- 연구자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후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학술활동 결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활동결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학술활동결과물이란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결과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제10항)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1. 간접비 지급

- 간접비는 신규 및 계속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함

2.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02-737-8971, <http://irb.or.kr>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 2017년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단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구수행 중인 경우, 재이수 필요)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사업 및 신청 관련 문의
 - 연구상담센터 : 1544-6118
 - 인문사회연구진흥팀 : 042-869-6208, 6202
- 평가 관련 문의
 - 사회과학단 : 042-869-6083, 6302
- 전산 관련 문의(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한국연구자정보(KRI),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106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전문 인건비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박사급 연구원(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임연구인력(연 3,000만원 이상/ 1인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퇴직금 포함
	학생 인건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전문학사·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2.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석사급 연구원	1. 학생인건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한다. 가. 전문학사·학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2. 학사급·석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원이 국내기관(지급받은 학술활동사업비에 대하여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에 소속되어 학술활동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학생인건비를 계상한다. 3. 전문학사·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이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학술활동 중단시점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이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직접비	장비·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試藥),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규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학술연구비	1.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내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여비는 해당 대학등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2. 회의비와 그 밖의 회의 관련 비용(다과비 등을 포함한다)은 항목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계상한다. 3.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4.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5. 그 밖의 학술연구비는 기간, 시장에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학술활동수당	해당 학술활동의 시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공동참여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1명이 1개의 학술활동에서 받을 수 있는 학술활동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학술활동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다.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구 분	정의 및 내용
SSK	한국사회과학의 영어 표현인 'Social Sciences Korea'의 머릿글자를 딴 약칭
Agenda	사업 신청시 연구팀의 10년간의 중장기 연구의제
연구과제	각 단계별(소형, 중형, 대형) 사업 신청시 제출된 단계내 연구주제
연구소 설립 여부	- 소형단계의 '연구팀'(Research Clan)과 중형단계의 '연구단'(Research Cluster)은 연구소 설립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SSK 중형신규 제외) 가능 - 대형단계의 '연구센터'(Research Center)는 교(학)칙에 명시된 설립 근거에 의하여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센터)설립이 되어야 함
SSK전임연구인력	-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함 -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연구과제와 관련된 강좌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3시간 이내로 추가로 강의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참여시 연간 30백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의 전임연구인력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기관 부담금)는 10% 별도 지원함 -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1.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 중형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중형단계는 2명, 대형단계는 4명을 임명
컨소시움 (Consortium)	중형 및 대형단계 진입시 유사 Agenda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의미

○ SSK 연구팀(단, 센터) 간 연합 도모 및 네트워크 강화

구 분	운영 내용
연구팀(단,센터) 간 연합 도모	· 학문 접근 방식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문간·대학간·국가간 연구 영역의 자율적 연합을 권장 ※ 3→4년, 6→7년차 단계 평가 이전 연구팀 간 연합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를 통해 단계 진입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단(센터) 구성 ※ 장기적 발전가능성 및 우수 연구실적이 인정된 연구팀(단)은 단독성장도 가능(단독성장팀의 비율은 단계진입 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2개 이상 연구팀(단)이 연합하고 연구팀(단)의 1/2 이상 참여할 경우 연합으로 인정하고 연구단의 총괄책임자는 소형 연구팀의 연구책임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소형 연구팀의 연구책임자가 반드시 연구단에 참여할 의무는 없음
	· 연구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되, 학문 접근방식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문간·대학간·국가간 연구 장려
	· 해당분야 Agenda가 유사할 경우 선정년도가 다른 팀(단)간 연합도 허용하되, 연구팀(단)의 논문제출 및 기타 의무사항은 연합연구단(센터)으로 승계하며 선정년도 차이는 1년을 기준으로 함
	· 주관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되, 2개 이상의 연구팀(단)의 연합체일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협력연구책임자 소속기관별 연구비 배분 가능(간접비가 포함된 연구비 일부를 협력대학으로 이관) ※ 중·대형단계 연합체 구성 이후에도 이전 단계의 연구방향 및 목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의 연속성 보장(세부책임자는 연합 이전 연구팀(단)의 연구책임자를 권장함)
	· 연합체(Consortium) 구성을 통한 단계 진입 시 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현황 보고서(Position Paper)를 연 1회 발간하여 연구팀간의 화학적 결합 유도(일반적인 운영상황 및 연구진행 상황, 성과·전망 등)
연구팀(단)간 네트워킹 강화	· 사회과학분야 연구의 융합과 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 여부에 관련 없이 연구팀 간 광범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 단독성장팀도 학문적 교류 차원에서 연구팀 간 네트워킹에 참여 권장
	· SSK연구팀(단)간 자발적 교류협력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 지원 사업단 운영 ※ 네트워킹 참여 실적을 연차 및 단계평가 시 반영

○ 기타 운영사항

구 분	운영 내용
SSK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SSK박사수료생(이하 “SSK연수생”이라 함)은 해외연수 이전 최소 6개월간 SSK연구팀(단·센터)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사람 중 선발하며, 연수 기간은 1년 이내로 연장은 불가하고, 출국 후 1년간 30일 이상 국내체류를 불허함 · SSK연수생은 해외연수 종료 후 2년 이내 박사논문이나 한국연구재단등록지를 1편(주저자), 귀국 후 6개월 이내 연구책임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SSK연구팀(단·센터)은 SSK연수생 선발 시 즉시 재단에 통보해야 하며 연차보고서 제출 시 SSK연수생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수계획 변경 및 연수중단과 관련해서는 연구책임자의 승인 하에 증빙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즉시 제출해야 함 · 연수 중단 시 연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연수비를 일할 계산 반납하고 중단일 까지 결과를 정리한 연수결과보고서를 연구책임자에 제출해야 함

< 연수비 관리 사항 >

- SSK연수생은 각 단계별 3년차 연구개시일 6개월 이내에 출국하고 국가별 차등 없이 연간 25,000천원 이내에서 연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SSK연수생의 해외연수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할 경우 연수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함
- 단계 내 연차평가 탈락 팀의 잔여예산으로 연수비용이 지급되는 바 연수금액은 유동적이며, 연수대상자가 있는 연구팀에게만 연수비용을 지급함
- SSK연수생의 해외연수 신청이 저조하여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계속과제의 추가 선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일할 반납조치) 일시귀국과 조기귀국 기간이 위의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일할 반납토록 함
- . (전액 회수) 무리한 일시귀국 또는 임의의 조기귀국 등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연구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Mega-Agenda		Semi-Topic 및 개요 설명
1. 공공문제 해결과 리스크관리	Semi Topic (예시)	위험관리와 공공문제의 선제적 해결/ 지속가능발전과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 사회갈등 예방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과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
	개요 설명	- 우리사회 불확실성 해소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하여 잠재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 - 제반 사회 영역별 또는 영역 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평가, 대응, 모니터링 하는 사회과학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축
2. 제4차 산업혁명과 융합적 공진화	Semi Topic (예시)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일자리)/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ICT 기반의 사회혁신시스템/ 인공지능(AI)·로보틱스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도적·사회적 융합적 대응/ 디지털리터러시와 디지털복지
	개요 설명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초연결 사회가 초래할 다양한 미래는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 - 과학기술 및 시스템 전환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미래상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폭넓은 이해와 연구
3. 다차원적 삶의 질	Semi Topic (예시)	삶의 방식 변화와 인간 행동 이해/ 사회통합과 다차원적 삶의 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다차원적 삶의 질/ 시민참여 플랫폼과 지역사회공동체 발전/ 다차원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 역량
	개요 설명	- 현대사회는 의·식·주·건강 등 필수 생존욕구 이외에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욕구, 성취와 인정, 능력에 대한 자존욕구, 자아실현 등 고차원적 욕구에 대한 결핍을 호소 - 인간의 욕망과 사회문제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사회과학 분야별 삶의 질 연구를 넘어 분야 간 혹은 사회과학 외 공학, 인문학적 관점과 접목한 새로운 융합적 관점의 다차원적 삶의 질 이해와 연구
4.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공공성	Semi Topic (예시)	21세기 뉴노멀 시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스템 변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규범과 공공가치(공정·정의, 소통·책임, 청렴·윤리, 공공성 등) / 뉴노멀시대 정부-시민 관계와 정부역량
	개요 설명	- 저성장, 저소비, 저출산, 고령화, 급격한 기술변화 증대 등으로 설명되는 뉴노멀 현상은 생산성 저하, 경제적 불평등, 사회불안 증대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와 초위험사회로의 진입 의미 - 뉴노멀 현상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며 이로부터 국가, 정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

•자유 Agenda

-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과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Agenda에 포함되지 않은 소외된
아젠다 영역에서 신규과제의 15% 내외 선정(단 선정평가 결과 자유 아젠다 신청과제가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 아젠다 100% 선정 가능)

붙임4

평가항목 및 배점

○ 소형 신규 선정평가 항목(Top-Down 아젠다)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적합성	장기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장기집단연구로서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	10
	아젠다와의 적합성	SSK 아젠다와 연구주제의 적합성	10
연구계획	연구계획의 우수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 과제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 - 연구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 - 연구계획의 체계성 - 학제적 분과 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및 의지	35
연구진 구성	연구집단의 우수성	-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 -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 - 연구진의 다양성 - 대학간 연계수준의 타당성	25
사업추진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합리성 - 사업팀 운영계획의 체계성 - 연구활동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20
합계			100

○ 소형 신규 선정평가 항목(Bottom-Up 아젠다)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적합성	장기사업으로서의 적합성	■ 장기집단연구로서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	10
연구계획	연구계획의 우수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 과제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 ■ 연구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 ■ 연구계획의 체계성 ■ 학제적 분과 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및 의지	40
연구진 구성	연구집단의 우수성	■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 ■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 ■ 연구진의 다양성 ■ 대학간 연계수준의 타당성	30
사업추진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합리성 ■ 사업팀 운영계획의 체계성 ■ 연구활동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20
합계			100

구분	인정범위	저자수	1건당 인정편수	인정율	환산결과
학술논문	SCI, SSCI, A&HCI 학술지	1인	2	100%	200%
		2인	2	70%	140%
		3인	2	50%	100%
		4인	2	30%	60%
		5인 이상	2	25%	50%
	SCIE, SCOPUS 학술지	1인	1.5	100%	150%
		2인	1.5	70%	105%
		3인	1.5	50%	75%
		4인	1.5	30%	45%
		5인 이상	1.5	25%	38%
	한국연구재단 등록학술지* * 기존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1인	1	100%	100%
		2인	1	70%	70%
		3인	1	50%	50%
		4인	1	30%	30%
		5인 이상	1	25%	25%
학술저서	교과서 성격의 저서는 제외되며, 독창적인 이론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에 한함 * ISBN이 수록된 출판물에 한정 * 단순한 서평, 학회지원고, 저서의 개정증보판은 제외	1인	2	100%	200%
		2인	2	70%	140%
		3인	2	50%	100%
		4인	2	30%	60%
		5인 이상	2	25%	50%

ABD해외연수
참여 여부선택

ABD 연수 참여

ABD 연수 불참

연구 계획서

<2017년도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연구의제 (Agenda)	* 지정주제 : 4대 Top-Down Agenda 중 명시 * 자유주제 : 10년 장기 주제 명시(자유 기술)				
연구규모 ※ ABD 해외연수를 진행할 경우 소형 3년차에 2천5백만원 추가 신청 요망 (최대 125백만원 까지 신청 가능, 간접비 제외, 단 해당연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여부 변동 가능)	연구기간		3년	2017. 9. 1 ~ 2020. 8. 31.	
	신청 연구 비	소형	천원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	총 명 (전임연구인력: 명)
		1차년도	천원		
		소형	천원		
		2차년도	천원		
소형	천원	계	천원		
3차년도	천원				
연구과제	국 문	소형단계(3년)동안 진행할 연구주제(10년 장기주제의 세부주제)			
	영 문				

<목차>

- I. 연구계획 ○
 - 1. 연구의 목적 ○
 - 2. 연구방법 및 내용 ○
 - 3. 결과 활용방안 ○
 - 4. 기타사항 ○
 - 5. 참고문헌 ○
- II. 연구추진계획 ○
 -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 2. 연구수행일정 ○
 - 3.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
 - 4. 연구비 규모 ○
 - 5.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학술지 ○
- III. 대표업적 ○

I . 연구계획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학문발전 공헌도, 결과 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목차”를 반드시 포함함-[총괄 앞장]과 [I.연구계획] 사이에 “목차” 배치)
- ※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I.연구계획, II.연구추진계획)는 A4용지 25쪽 이내에 작성해야 함. (표지, 목차, III.대표업적은 쪽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5쪽을 넘는 경우 감점 처리 될 수 있음)
-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 ※ 연구과제의 평가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참고 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이름을 삭제할 필요는 없음
- ※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 작성 시 삭제하고 기술함

1. 연구의 목적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장기집단연구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0년 장기 연구를 위한 주제 설정의 타당성

2. 연구방법 및 내용

※ 제시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장기 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별(소형, 중형, 대형) 연구계획
- 단계별 목적 달성을 위한 연차별 연구계획(초기 3년은 연차별 계획 상세하게 작성하며, 중·장기 계획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국제협력계획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연구수행일정,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3. 결과 활용방안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등 인력양성 방안
- 연구결과의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4. 기타사항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출장의 필요성 및 연구비 집행계획 등-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
|--|

5. 참고문헌

Ⅱ. 연구추진계획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을 기술)

2. 연구수행일정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 예시 >

1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7. 9		
10		
...		
...		
~2018. 8		

2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8. 9		
10		
...		
...		
~2019. 8		

3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9. 9		
10		
...		
...		
~2020. 8		

※ 연구개시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3.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자별 연구수행계획을 기술)

- ☞ 향후 연구수행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가 동일하므로 공동연구원별로 실질적인 역할분담내역 및 연구수행계획을 기술함. 연구책임자도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관리의 기능만 담당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이름 등)는 기재하지 않음

< 예시 >

참여형태 구분		참여자 구분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연구책임자		갑		1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 연구원	갑		
		을		
		병...		
	전임 연구인력	갑		
		을		
		병...		

4. 연구비 규모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타당성 등 기술)

5.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학술지

Ⅲ. 대표업적

연구자별 대표연구업적 목록

참여 구분	연번	업적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출판 연월 (게재권호)	저자 수	저자구분
			학술지명(출판사명)			
책임	1	논문			명	
책임	2	저서			명	
책임	3				명	
갑	1				명	
갑	2				명	
갑	3				명	
을	1				명	
을	2				명	
을	3				명	
...	...				명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과 일치하도록 목록 작성

※ 참여구분 : 연구책임자는 책임, 일반공동연구원의 참여구분은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 연번 : 연구자별로 각각 연번 작성

※ 업적구분 : 논문/저서/역서/국제특허 중 택1 기재

※ 저자구분 :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표기(주저자, 교신저자가 중복될 경우 주저자로 표기)

연구업적 요약문			
요약문 번호	참여구분-연번	업적 구분	논문() 저서() 역서() 국제특허()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학술지명(출판사명)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3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공동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비카드발급을 위해 신한카드, IBK기업은행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며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NTIS시스템에 제공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공동연구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7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신청년도 2017년

연구과제명 _____

☐ 참여인력

연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1	연구책임자				
2	공동연구원				
3	공동연구원				

※ 참여인력 전체에 대하여 작성(연구보조원은 제외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1. 2010~14년 선정 SSK 참여연구자가 2017년 신규 SSK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동일사업內 1과제만 참여할 수 있으며, 2010~14년 선정 SSK사업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면 2017년 신규 SSK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외국대학 소속의 외국인 연구자가 참여 가능 합니까?

➔ 외국대학 소속의 외국인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공동연구원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KRI(한국연구정보)에 연구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국내대학에 소속된 외국인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함

3. 하반기 집단연구사업에 몇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하반기 공모 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학문후속세대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토대연구지원(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 사업 포함), 대학중점연구소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인문한국(HK)지원, 사회과학연구(SSK)지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지원 중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신규 신청과제수와 기 참여과제수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4. 2017년 현재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인데, 지원 가능합니까?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구가 종료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연구종료일이 2018. 1. 1. 이후인 과제라도 우수학자지원, 저술출판지원 중 저술 성과확산지원, 우수논문지원, 정책중점연구소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사회과학연구지원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인문학대중화지원 중 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 등은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5. SSK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에 한정됩니까?

➔ SSK사업의 연구책임자는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분류표상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인문대학 소속의 연구책임자라도 KRI(한국연구자정보) 상에 연구분야가 사회과학 분야로 지정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함.

6. 박사수료생(ABD) 해외연수는 의무사항 인가요?

- ➔ 소형 3년차에 박사수료생(ABD)을 1년간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으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연수대상자가 없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평가에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 박사수료생(ABD)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 팀은 3년차 연구비(직접비)에 25백만원을 추가해야 함.

7. 동일대학, 동일학과 소속만으로 팀 구성을 자제하는 최소요건주의 방식의 의미는?

- ➔ 동 사업이 추구하는 지원방향이 학문간, 대학간, 국가간 팀구성을 통한 창의적, 생산적 연구역량 창출에 있기 때문에 동일대학 동일학과 소속팀을 구성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 동일대학, 동일학과로 구성된 연구팀일지라도 동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평가 시 별도의 감점기준은 없으나, 연구의제 및 목적에 적절하게 연구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 ※ 연구진 구성은 학제간·대학간·국가간 연구진을 필수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팀의 연구의제와 목적에 맞게 연구진을 구성함을 기본방향으로 함.

8. 연구팀 구성시 인원제한은 있습니까?

- ➔ 동 사업의 소형연구팀은 3인 이상의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구 분		구성기준	연구업적 및 자격
연구책임자		1명	■ 연구업적 3편 이상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최소 2명 이상	
	전임연구인력		
연구보조원			■ (전문)학사·석사·박사 과정생 및 학사·석사급 연구원

9. SSK사업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연구자는 동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까?

- ➔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연구자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여연구원 중 1인 이상은 소속기관에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향후 중형 및 대형단계 진입 시,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에 전담연구시설을 설치하기에 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신청함을 권장함.

10. 연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 ➔ 연구계획서는 A4 용지 25매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대표업적 미포함)
- ※ 연구계획서 편집 기준(A4용지 아래한글 작성 시)은 제목 15pt, 소제목 13pt, 본문 11pt, 줄 간격 160%, 좌우여백(20), 상하여백(10), 머리말/꼬리말(10)임.

11. 연구계획서 표지 중 ‘연구의제(Agenda)’와 ‘연구과제’의 차이점은?

- ➔ 연구계획서 양식의 연구의제(Agenda)는 10년간 연구진행을 하는데 있어 장기적, 거시적 쟁점의 연구의제를 의미하며, 연구과제는 소형 단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 연구주제를 의미합니다.

12. 최종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기준은?

- ➔ 최종연구결과발표물은 연차 및 단계평가 시 종료된 연구팀에 한해 종료 후 2년 이내 최소한 연간 소형 200%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업적기준	비고
SSK 소형 연구팀	해당 지원년수 × 200% 이상	※ 세부산출기준은 붙임5 산정비율표 참조

13. 연구진들은 신청 전까지 모두 확보되어야 합니까?

- ➔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은 신청 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전임연구인력은 대학에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 후 3개월간의 확보 기간을 드리오니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14. 온라인 신청 시 대표업적 선택과 계획서상의 대표업적(연구업적요약문)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업적은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제외)이 “한국연구자정보(KRI)”에 등록한 연구 업적 중 3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대표업적은 연구계획서 내의 대표연구업적요약문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15. 연구비로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연구비 신청 시 직접비 항목 내에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이 있으며, 동 세목에는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신청요강에 첨부된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PC,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프린터 등의 구입 지양

16. 간접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 간접비는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금액에 대해 대학별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재단에서 별도 지원합니다.

1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 양식을 출력하셔서 서명하신 후 스캔하여 파일(PDF, HWP, DOC)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탑재하시면 됩니다.)

※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